

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04. 4. 16.] [규칙 제443호, 2004. 4. 16., 제정]

서울특별시 양천구(자치행정과), 02-2620-3085

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(이하 조례 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의 대행) 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센터(이하 센터 라 한다)의 운영을 대행하는 기관(이하 대행기관 이라 한다)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.

1.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
2.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재정적인 부담능력
3.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과 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그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대행기관의 성명 및 주소
2. 대행기간
3. 대행사무 및 그 내용

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⑤ 대행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,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대행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(자원봉사주간의 설정)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 주간은 10월 4일 이 속한 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 지급,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활동평가대회, 자원봉사대축제 및 홍보박람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인정감 부여)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.

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상패·명패 또는 메달의 제작, 서울특별시양천구가 주관하는 행사등에 초대하거나 각종 강좌에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경비의 지원)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구정업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서식 및 대장의 비치)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1.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[별지 제1호 서식]
2.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[별지 제2호 서식]
3. 자원봉사자 ID카드 [별지 제3호 서식]
4. 자원봉사자 ID카드 발급대장 [별지 제4호 서식]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 등으로 본다.